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81 발의연월일: 2021. 1. 27.

발 의 자:이양수·김은혜·정희용

안병길 · 주철현 · 정운천

추경호 · 권성동 · 이개호

권영세 • 이만희 • 김태호

김성원 · 서삼석 · 조수진

이헌승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8년 이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권고, 선원교육, 해적동향 전파 등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국민이 해적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해적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행정력이 지속 낭비되고 있음.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외국적어선 승선 우리국민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해기사의 면허 제재 등 행정

처분을 위한 규정이 현행법에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7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 해역에서 조업 또는 통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 하여야 한다.
- 1.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 2. 2차 위반: 면허취소

제10조 중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③	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
	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
	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험해역에서 조업
	또는 통항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u>2. 2차 위반: 면허취소</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제1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청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